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 안 변 호	2284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10월 16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40,600백만원 기금 확보 예상 시점이 당초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도 상반기로 변경됨
- 사업시행자와 서울시 협약에 따른 기금 납부 시점(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)이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로 변경
- 나. 기금 확보 시점을 반영하여 2024년 지출계획상 예치금을 0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
- 다.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
- 2024년 수입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당 초 (A)	변 경 (B)	증 감(B-A) (증감률)
합 계	40,600	-	△40,600 (100%)
세외수입	40,600	-	△40,600 (100%)
임시적세외수입	40,600	-	△40,600 (100%)
기타수입	40,600	-	△40,600
그외수입	40,600	-	△40,600

- 2024년 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	당 초 (A)	변 경 (B)	증 감(B-A) (증감률)
계		40,600	-	△40,600 (100%)
공공시설등 설치비용(공공시설등설치기금)		40,600	-	△40,600 (100%)
여유자금 예치 (공공시설등설치기금)	일반예치금	40,600	-	△40,600 (100%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안아영 (☎ 2133-8321)